

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20일
신청인	기관명	전화번호
	소재지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	

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고용노동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지정 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